

사단법인 전력전자학회 규 칙

제 1 장 목 적

제1조(목적) 본 규칙은 전력전자학회 정관 제36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입 회

제2조(입회신청절차) 정회원, 학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 홈페이지에 가입신청 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3조(회원자격의 자동변경) 학생회원은 졸업과 동시에 정회원이 된다.

제 3 장 회 비

제4조(입회비 및 회비의 종류)

- ① 정회원, 학생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② 평의원은 전 ①항의 연회비 외에 평의원회비로 연회비의 200%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①항 및 ②항의 연회비는 당해 회계연도 상반기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신입회원이 10월~12월에 입회시에는 ①항의 연회비를 50% 감면하고 회원의 권리는 당해 회계연도까지 갖는다.
- ④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5조(회원의 권한정지 및 자격정지) 정회원과 학생회원은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할 때 또는 법인회원으로서 회비를 5년 이상 체납할 때에는 모든 회원권한을 정지하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자격정지할 수 있다.

제6조(기납금품의 불반환) 회원은 기납한 입회비, 회비 및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 4 장 회 무

제7조(이사의 직무분업 및 정원) 회장,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 회장은 직무별로 담당이사 약간 명을 임명할 수 있다.

- ① 이사의 직무별 명칭은 다음과 같다.
 1. 총무이사
 2. 재무이사
 3. 편집이사
 4. 학술이사
 5. 연구사업이사

6. 산학협동이사
7. 기획이사
8. 국제이사

② 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총무이사 : 인사, 문서, 섭외, 각종 기획 및 일반 서무, 정관, 규칙 및 규정, 회원 및 지부 관리, 상훈
2. 재무이사 : 예산, 결산, 금전출납, 재무관리
3. 편집이사 : 학회지, 논문지 JPE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발간, 도서관리, 광고기획
4. 학술이사 : 학술대회, 강연, 좌담회 및 국내학술기관과의 협력
5. 연구사업이사 : 기술연구조사, 연구관련사업, 표준 및 규격 제정, 연구회 및 전문위원회
6. 산학협동이사 : 산학연 학술연구기관과의 협력
7. 기획이사 : 학회의 장기발전에 관한 기획, 학회의 정보화
8. 국제이사 : 외국 학회 및 국제기관과의 교류 협력, ICPE 등 국제학술회의

③ 협력부회장 및 협력이사 : 학회발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는 10인 이내의 협력부회장과 25인 이내의 협력이사를 둘 수 있다.

1. 지부장과 연구회의 위원장은 재임기간 중 당연직 협력이사로 한다. 단, 전 ①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2. 협력부회장 및 기타의 협력이사는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의 말일까지를 임기로 한다.
3. 협력부회장 및 협력이사는 본 학회의 학술활동에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자문하며, 필요시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8조(사무국) 회장은 회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제 5 장 평의원 선출

제9조(평의원 선출절차) 평의원의 선출절차는 다음과 같다.

① 직선평의원

1. 이사회에서 직선평의원수의 3배수 이내에서 평의원후보자를 선정한다.
2. 직선평의원은 전 1호의 후보자 중에서 평의원 정족수의 3/4을 득표순위에 따라 정회원이 선출한다. 단, 60인을 초과하거나 30인 미만으로 투표할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한다.

② 간선평의원

1. 전임회장은 65세까지 당연직 평의원으로 선출한다.
2. 지역 및 산학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당연직 평의원을 포함해서 평의원 정족수의 1/4을 간선평의원으로 선출한다.

제 6 장 명예회장 추대,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

제10조(명예회장 추대,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)

- ① (명예회장 추대) 회장은 본 학회의 전임회장 중 학회 발전에 공이 많은 자를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에 추대할 수 있으며,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.
- ② (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) 본회는 본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에서 약간인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각종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.

제 7 장 위원회 및 연구회

제11조(위원회 및 연구회의 설치)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본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전문분야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.

제 8 장 지 부

제12조(지부설치요건) 지부는 국내 및 해외 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며, 정회원 30인 이상으로 한다. 단, 정회원수가 정족수에 미달하는 지부의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.

제13조(지부임원의 정원) 지부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1. 지 부 장 1인
2. 지부이사 약간인
3. 지부감사 1인

제14조(지부임원의 임기 및 지부장 자격) 지부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지부장은 최근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으로 한다. 단, 해외 지부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. 지부장 유고시에는 지부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임원에 관한 기타사항은 정관 제 3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5조(지부규약의 제정) 지부는 정관 및 본 규칙취지에 의하여 지부규약을 만들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제16조(경비의 보조) 해당 지부 회원이 본 학회에 납부하는 연회비의 범위 내에서 지부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17조(예산, 결산보고) 지부는 매년도 예산, 결산 및 사업의 보고를 매년 1월말까지 하여야 한다.

제18조(직장간사) 지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지역 내의 정회원 5인 이상이 있는 직장에는 직장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.

제 9 장 간행물 발간

제19조(간행물 발간) 본회는 학회지, 논문지를 짝수월 20일에, JPE를 매월 20일에 각각 발간하며, 도서는 필요에 따라 발간할 수 있다.

제20조(회지 배포) 학회지는 회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고 논문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배포에 관

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 국내외 학회, 공공기관과는 무상으로 배포 또는 상호 교류할 수 있다. 다만, 비회원으로서 회지와 논문지 및 기타 간행물의 구독을 희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 10 장 포상 및 장려

제21조(포상의 대상) 본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22조(포상의 종류) 본 학회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공로상
2. 학술상
3. 논문상
4. 기술상
5. 특별상은 후원자 명의의 학술상 또는 기술상
6.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상

제23조(포상규정) 포상에 관한 사항은 포상규정으로 정한다.

제24조(연구비 보조) 전력전자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회 또는 개인에 대하여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25조(장학금 지급) 본 학회에 장학생을 두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6조(포상 실시) 본 학회에서 정하는 포상 및 장려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시행한다.

부 칙

1. 본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 및 기준 등 내규는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.
2. 본 규칙은 평의원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3. 본 규칙은 1998년 3월 2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4. 본 규칙은 1999년 11월 1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5. 본 규칙은 2000년 4월 7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6. 본 규칙은 2002년 6월 7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7. 본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8. 본 규칙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9. 본 규칙은 2008년 5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10. 본 규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11. 본 규칙은 2012년 7월 4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12. 본 규칙은 2013년 11월 16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13. 본 규칙은 2017년 7월 6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14. 본 규칙은 2017년 11월 2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15. 본 규칙은 2018년 7월 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16. 본 규칙은 2019년 11월 23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17. 본 규칙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18. 본 규칙은 2021년 7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